

연구보고서 2007-15

#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에 관한 연구

《研究陣》

---

연구위원 : 이진권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 목 차

제1장 서론 .....	5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	5
제2절 연구범위 .....	6
제2장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의 입법과정 .....	7
제1절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제정과 폐지 .....	7
제2절 치안관리처벌법의 제정 .....	10
제3장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의 내용 .....	12
제1절 총칙적 내용 .....	12
제2절 치안관리처벌의 종류와 적용방법 .....	18
제3절 치안관리위반행위의 종류와 처벌 .....	26
제4절 처벌의 절차 .....	59
제5절 치안관리처벌법의 집행감독 .....	73
제6절 부칙의 내용 .....	76
제4장 치안관리처벌조례와의 비교 .....	77
제1절 수정·추가된 내용 .....	77
제2절 치안관리처벌법의 특징 .....	83

제5장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에 대한 분석 .....	86
제1절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의 체계 .....	86
제2절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과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의 비교 .....	87
제6장 결 론 .....	90
참고문헌 .....	92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 1. 연구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경찰은 수사권조정을 추진하려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농민시위와 관련 경찰청장이 사퇴하는 등 오히려 경찰력의 위축현상을 가져왔다. 며칠 전에는 “매 맞는 경찰”이라는 웃지 못할 신문보도가 의식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약한 경찰의 위상과 경찰권에 대해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

연구자는 경찰이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필요한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직법적으로 그리고 작용법적으로 법적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조직법으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무규정 정도이고, 경찰작용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상 즉시강제에 관하여 몇 가지 근거규정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실제 경찰이 치안 일선에서 막중한 임무에 상응하는 경찰력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찰은 수사권을 포함한 경찰권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찰작용법의 제정이 매우 필요하며 이에 경찰권의 실현 요건과 절차뿐만 아니라 경찰구제에 관하여도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되어 가는 중국의 경찰은 우리나라와 달리 수사권을 행사하고 폭넓은 영역에서 강력한 경찰력을 발휘하며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中國의 “治安管理處罰法”은 총 117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중국경찰의 경찰작용법, 특별형법, 특별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2005년 8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과거 “治安管理處罰條例”에 비해 대폭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과거의 治安管理處罰條例를 왜 治安管理處罰法으로 대폭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며 우리나라 경찰업무발전에 필요한 모델로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2. 방 법

문헌에 의한 연구,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 및 연구, 중국에서의 자료수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연구함.

### 제2절 연구범위

연구자가 연구할 주요 내용은 2005년 8월 28일 통과되어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治安管理處罰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와 그 처벌, 공공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그 처벌, 신체와 재산에 대한 침해와 그 처벌 그리고 사회에 대한 치안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경찰이 위의 처벌행위에 대한 업무집행에 관한 조사, 결정,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치안사건처리에 대한 요건, 감독의 주체와 감독 내용, 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금지하는 행위와 위반시 행정책임, 형사책임 그리고 배상책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법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연구하면서 그 규정들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의 관련 법규정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하면서 관련되는 중국의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등의 내용과 국내의 상호 관련되는 문헌과 저서들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 제2장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의 입법과정

### 제1절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제정과 폐지

치안관리처벌법 시행 전의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는 일찍이 1957년 10월 22일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8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약 30년 동안 중국에서 시행한 후, 1986년 9월 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sup>1)</sup> 그 후 약 20년간 이 치안관리처벌조례는 중국의 공안기관 특히 치안관리부문에서 치안관리를 하는 중요한 법적 무기였고 또한 각종 치안관리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한 범죄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사회의 치안질서를 유지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중국 공민(公民)<sup>2)</sup>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등의 방면에서 많은 힘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치안관리처벌조례는 그 동안 새로운 중국의 치안관리처벌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정치·경제·사회생활 등에서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고 법률을 정비하여 왔는데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는 갈수록 커져갔다. 그리고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있어 부딪치는 각종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져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형태도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1986년의 치안관리처벌조례는 이미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부분적인 수정을 하였으나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 등은 오늘날 중국의 현실과 조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최근 중국은 법체계의 정비를 강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中華人民共和國行政處罰法, 中華人民共和國行政復議法,<sup>3)</sup> 中華人民共和國行政訴訟法 등 공안행정과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공포하여 왔다. 특히 소방, 교통, 공민(公民)신분

1) 陳晉勝, 警察法學概論, 高等教育出版社, 2004, 111面.

2) 중국의 헌법 제33조는 "중국의 공민(公民)은 법률 앞에 모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민에 상응하는 의미로 공민(公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國民)의 뜻과 구별되고 한다. 劉茂林, 憲法教程, 法律出版社, 1997. 242面.

3) 행정심판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증 등에 관하여 최근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적용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상호 충돌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치안관리처벌조례는 점차 낙후된 법령이 되어갔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규율하는 내용의 범위 협소

치안관리처벌조례가 규정한 치안관리위반행위는 단지 8종 73개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은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매춘호객행위, 강제구걸행위 등 십 수 년 동안 사회에 위험성이 있어 치안관리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범죄가 약 백여 가지를 넘어 사회에 대한 위해가 갈수록 심각해졌다. 그래서 중국의 형법이 1997년 3월 14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수정되어 통과된 후 새로운 죄명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런데 그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사회에 대한 위험도 심각하지 않아 아직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사회에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치안관리처벌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치안관리처벌조례에는 아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치안관리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 공안기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동시에 사회는 이미 과거에 비해 급변하여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일부 조항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변하였는데 예를 들어 유맹행위(流氓行爲, 떠돌이강패짓)처럼 죄명이 다른 관련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교통관리위반행위, 소방관리위반행위처럼 다른 단행법이 이미 규정을 정비하여 실무상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조항도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율범위에 대하여 조정하고 증가시킬 필요가 생겼다.

## 2. 적은 처벌 종류와 범위의 협소

치안관리처벌조례가 규정한 처벌의 종류는 단지 경고, 과태료, 구류였고, 처벌 외의 법적 조치로는 몰수<sup>4)</sup>, 훈계와 서약서제출을 통한 회개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3종의 처벌종류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에 직면하여 적용하기 적의치 않아 실무적으로는 왕왕 중국의 행정처벌법이 규정한 행정처벌의 종류를 적용하곤 하였다. 또한 처벌의 범위가 좁았는데 주로 과태료액의 범위가 좁았다. 그런데 중국경제의 발전으로 도시주민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치안관리처벌조례가 규정한 대부분의 치안관리위반행위의 과태료인 2백위엔이라는 상한은 이제 너무 적은 액수가 되었고 일부 치안관리위반행위에는 징벌의 작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3. 처벌절차의 단순

법집행절차의 완비와 법집행활동의 절차적 합법화는 법치주의 실현의 중요한 표지이면서 공정하고 합리적 법집행을 보장하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치안관리처벌조례는 단지 소환, 신문, 증거수집, 재결 등 절차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만 있고 치안관리사건에 대하여 관할, 회피, 증거의 종류, 조사, 검사, 위법한 물품에 대한 압수 등 치안사건처리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들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절차규정으로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기가 곤란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행정처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의 법률은 절차적 규정을 자세히 정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들도 모두 치안관리처벌과정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치안관리처벌조례는 절차적 방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여 중국경찰의 실제 업무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띠게 되었고 중국전역의 각지에서 법집행이 각양각생의 모습을 띠어 법률의 권위와 엄정성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4) 중국의 치안관리처벌조례 제6조에서는 명시적으로 처벌의 종류로서 경고, 과태료, 구류 3종만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서 몰수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처벌의 종류로 보지 않고 관련된 법적 조치로 본다. 한편 중국형법에서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부가형으로 '재산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형벌에 관하여는 이진권, "중국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2집, 2006, 307면.

#### 4. 기타법률과의 부조화

치안관리처벌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중국은 법제정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수많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수정되었는데, 치안관리처벌조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처벌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소방법, 형법 등의 법률의 반포와 시행은 치안관리처벌조례가 내용부터 형식까지, 실제적인 면부터 절차적인 면까지 모두 이러한 법률과 상호 조화되지 않고 심지어는 모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sup>5)</sup> 한편 치안관리처벌조례가 낙후되어 치안관리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치안관리처벌을 과하는 단행법률들이 연속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公安기관이 단속하는데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지만 각양각색이어서 위법행위의 대양, 처벌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公安기관의 법집행에 매우 큰 문제가 되었다.

### 제2절 치안관리처벌법의 제정

1997년 8월 중국 公安部는 정식으로 치안관리처벌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치안관리처벌조례개정팀은 조사연구와 함께 중국 각계인사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특히 중국의 각 지방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건의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2년 4월 28일 중국 公安部는 국무원에 치안관리처벌법심사용원고를 발송하였다. 국무원은 이를 접수 후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40여 개 국무원 각 부문의 의견을 수집하고 중요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한 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초안은 2004년 9월 29일 국무원 65차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0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4년 10월 초안에 대해 1차 심의를 한 후

5) 劉仁文은 중국의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2가지는 치안관리처벌조례가 중국의 행정처벌법 및 형법과 조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劉仁文, "治安管理處罰條例需要全面修訂", 法學雜誌 第1999-1期, 718頁. : <http://www.law-star.com/pshowtxt?keywords=&dbn=lwk&fn=lwk005s718.txt&upd=1> 2006. 11.20.

각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에 기초하여 수정을 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2005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을 통과시켰다.

## 제3장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의 내용

### 제1절 총칙적 내용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1장은 총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은 총 9개 조(條)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본법의 목적·임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 형법과의 관계, 치안관리처벌의 절차와 근거, 관할, 기본 원칙, 치안확보에 대한 각급 정부기관의 역할, 민사책임과 조정(調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 지역관할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많은 내용이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비하여 바뀌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치안관리처벌법의 목적·임무

치안관리처벌법 제1조에서는 치안관리처벌법의 목적 또는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며, 공민(公民)과 법인 그리고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그 소속 경찰의 치안에 관한 직무를 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을 규범화하고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이하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조례에서는 그 목적을 사회의 질서유지라고 하였는데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사회의 치안질서 유지라고 하여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동시에 경찰력을 치안 외의 목적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6)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치안관리처벌조례에서 처벌하던 잔디, 화초 또는 수목에 대한 훼손행위에 대하여 비록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지만 경찰력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다른 기관이 단속을 맡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서 아직도 자연훼손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하겠다.

## 2. 치안관리위반행위와 치안관리처벌행위

치안관리처벌법 제2조에서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방해하고 인신에 관한 권리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어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규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공간기관이 본법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2조의 내용은 치안관리처벌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중국의 형법과 치안관리처벌법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중국의 형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성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형벌을 과하는 체계가 아니라 행위의 정상(情狀)이 현저히 경미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 범죄로 보지 않는다.<sup>7)</sup> 여기서 정상이 현저히 경미하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크지 않다는 것이다.<sup>8)</sup> 예를 들어 절취액이 매우 작다면 중국 형법 제13조에 의해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의 형법에 의하면 어느 행위가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어도 이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sup>9)</sup>

형법과 치안관리처벌법을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중국의 형법이 범죄행위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치안관리위반행위와 치안관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부연하면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칭하지 않고 치안관리위반행위라고 하는 것이며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하여 과하는 제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라고 칭하지 않고 치안관리처벌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치안관리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치안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7) 중국 형법 제13조.

8) 侯國雲, 刑法總論探索,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4, 97面.

9) 趙秉志 主編, 新刑法教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7, 79面.

10) 熊一新·華敬鋒 主編, 治安管理處罰法解讀與適用, 法律出版社, 2006. 7面.

### 3. 치안관리처벌절차의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을 과하는 절차에 대하여 치안관리처벌법 제3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본법을 적용하되 만약 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국의 행정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법 제98조에는 청문회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청문회 실시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치안관리처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경우 중국의 행정처벌법 제42조와 제43조는 청문회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4. 지역관할

치안관리처벌법 제4조에 의하면 중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위반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을 적용한다. 중국의 선박과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위반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치안관리처벌법은 속지주의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특권과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외국인인 중국의 영역 내라 하더라도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묻는다.

둘째, 중국은 소위 ‘一國兩制’라는 제도를 적용하여 홍콩과 마카오 두 특별행정구에는 중국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제2조와 ‘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sup>11)</sup>

또한 ‘중국 영역 내에서 발생’의 의미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

11) 중국이 제정한 홍콩기본법과 마카오기본법에 의하면 양 지역에서 50년 동안 사회주의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劉茂林, 전계서, 189면.

는데 이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에는 명쾌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범죄의 발생에 관한 중국 형법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형법 제3조 제3관(款)<sup>12)</sup>에서는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가 중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중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가 중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위반행위는 중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다.

## 5. 치안관리처벌의 기본원칙

치안관리처벌법 제5조에 의하면 치안관리처벌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고 치안관리위반행위의 성질, 정상(情狀) 그리고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와 상당해야 한다.

그리고 치안관리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적이어야 하며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공민(公民)의 인격이 존엄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치안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교정과 처벌이 상호 조화되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sup>13)</sup>

## 6. 각급 지방정부의 치안에 관한 임무

치안관리처벌법 제6조에 의하면 중국의 지방에 있는 각급 인민정부는 치안유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회의 모순을 화해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중국의 형법 등 법령의 조문은 우리나라와 달리 '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관(款)'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①, ② 등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문장의 단락만 바꾸어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의 조(條) 아래 3개의 단락이 있다면 위에서부터 제1관, 제2관, 제3관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사용방법을 따라 이하 '관(款)'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13) 치안관리처벌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는 任惠華·李春瑾, "《治安管理處罰法》基本原則研究", 貴州省政法管理幹部學院學報 第2005-2期, 655頁. : <http://www.law-star.com/pshowtxt?keywords=&dbn=lwk&fn=lwk027s655.txt&upd=1> 2006.11.21.

이 조항은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가 치안업무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나타내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취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중요한 의의를 갖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에 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의 법규정은 참고할 만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치안이라는 문제는 경찰기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 7. 치안관리 책임부서와 치안사건의 관할

치안관리처벌법 제7조에 의하면 중국의 국무원(國務院)公安부서는 전국의 치안관리업무에 책임을 진다. 현급(縣級) 이상 지방 각급인민정부의公安기관은 당해 행정구역내의 치안관리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치안사건의 관할은 국무원公安부서에서 규정한다.

본 조항은 중국의 치안관리에 대한 담당부서와 치안사건에 대한 관할을 규정한 것이다. 중국 전체의 치안에 관한 책임은公安부(公安部)라고 할 수 있으면 각 지방별로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公安기관이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치안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8. 치안관리위반행위와 민사책임

치안관리처벌법 제8조에 의하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타인에 대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행위자 혹은 그 보호자는 법에 의한 민사책임을 진다.

본 규정은 치안관리처벌조례가公安기관에게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을 제외한 형태로 남아 있는 규정이라고 할

14)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그 확정시기는 미정이다.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범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 그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에 본 조항을 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 9. 치안조정

치안관리처벌법 제9조에 의하면 민간의 분규로 인해 발생한 폭행 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훼손 등 치안관리위반행위에 대하여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공안기관이 조정하여 화해시킬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조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나 합의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위반행위자를 처벌하고 아울러 당사자는 민사분쟁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본 조항은 중국의 경찰이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화해 또는 합의를 중재하고 당사자의 합의하에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 어떠한 위법행위가 가벌성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에 이를 반드시 처벌할 필요는 없을 것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매우 의의가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조항에 의하면 가벌성이 있는 치안관리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것보다 훈방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미한 범익침해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근거에 관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sup>15)</sup> 또한 소위 경찰의 훈방에 관하여는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서<sup>16)</sup>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를 근거로 삼는 견해가 있다.<sup>17)</sup> 그러나 즉결심판제도 자체가 폐지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경찰 훈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우리나라도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9조와

15)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312면.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5, 184면.

16)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99면.

17) 조국, “경찰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의 법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3, 64면.

같은 조항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례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 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 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sup>18)</sup> 사법경찰관리가 통상의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일체의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인지·보고해야 한다거나 또는 경찰은 훈방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훈방조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비유되는 것이고, 경찰훈방권의 주체도 경찰서장에게 한하지 않고 사법경찰관리에게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9)</sup>

## 제2절 치안관리처벌의 종류와 적용방법

### 1. 치안관리처벌의 종류

치안관리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치안관리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① 경고
- ② 과태료
- ③ 행정구류
- ④ 공안기관이 발행한 허가증 회수 및 취소

치안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출국시키거나 추방조치를 부가할 수 있다.

경고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가 그 행위의 성질과 위험성을 알게 하고 다시는 위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행정적 처벌이다. 경고는 일종의 훈계하고 꾸짖는 처벌이요, 정신적 처벌이라고 할 수 있어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가장 경한 처벌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훈방

18)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19) 조국, 전계논문, 46면.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경고는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반드시 치안관리처벌결정서에 의한 서면형식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업무 중 구두로 행하는 경고는 본 조항에서 말하는 치안관리처벌이 아니다.<sup>20)</sup>

과태료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일정액의 금전을 납부토록 하는 치안관리처벌이다. 일종의 행정벌로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다르다.<sup>21)</sup> 치안관리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법정한도는 2백위엔 이하, 5백위엔 이하,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 1천위엔 이하,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 5백위엔 이상 2천위엔 이하, 5백위엔 이상 3천위엔 이하, 5천위엔 이하, 1천위엔 이상 5천위엔 이하 등이 있다.

행정구류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를 단기간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치안관리처벌이다. 치안관리처벌의 종류 중 가장 엄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류의 법정한도는 5일 이하, 5일 이상 10일 이하,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3종이다.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수개의 행정구류처벌을 병합하여 처벌시 15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2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치안관리처벌법 제21조는 행정구류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정구류를 치안관리처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구류를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구류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경찰기관의 독단적 결정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만 가능할 뿐이다.

공안기관이 허가한 허가증을 회수하고 취소하는 처벌은 일종의 행정벌이요 자격에 관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안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증의 종류도 감소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공안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증으로는 전당포업, 여관업, 印章業 등이 있다.<sup>22)</sup>

외국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기한 내 출국조치와 추방조치는 일종의 부가적 처벌이

20)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26면.

21)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罰款'이라고 하는데 행정벌임을 감안하여 이를 본 논문에서는 '과태료'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2)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29면.

라고 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경고, 과태료, 행정 구류를 과할 수 있는 외에 추가로 출국조치 또는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출국조치 또는 추방조치를 부가할 경우는 주된 치안관리처벌을 집행한 후에 가능하다.

## 2. 치안관리처벌의 적용

### 가. 압수한 물품의 처리

치안관리처벌법 제11조에 의하면 치안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한 마약, 음란물 등 금제품(禁制品), 도박기구 도박자금 마약주사도구 및 치안관리위반행위에 직접 사용한 본인 소유의 공구는 몰수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 명부를 만들어 경매를 실시하거나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금전은 국고로 귀속시킨다.

본 조에서 말하는 마약과 음란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치안관리처벌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의 형법 제357조를 보면 “본법에서 말하는 마약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대마, 코카인 및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되게 하는 마취약품과 精神과 관련된 약품으로 국가가 통제할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중국 형법 제367조는 “본법에서 말하는 음란물은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色情을 노골적으로 자극하여 肉慾에 빠지게 하는 서적, 영화, 녹화테이프, 녹음테이프, 사진 및 기타 음란물품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체의 생리와 의학지식과 관련된 과학저작물은 음란물이 아니고 색정적 내용을 포함한 문학, 예술작품은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수물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수물의 보관은 자정보관(自廳保管)의 원칙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보관, 대가보관, 압수물의 폐기, 가환부, 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와 피해자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물의 환부나 대가보관의 경우 등 처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 규정이 있음에 비하여 치안관리처벌법

상엔 이러한 규정이 없음이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 나. 미성년자의 치안관리위반 처리

치안관리처벌법 제12조에 의하면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종경(從輕) 혹은 감경(減輕)하여 처벌하고 14세 미만의 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지 않으나 그 보호자가 책임지고 엄격히 지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연령에 따른 처벌의 다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14세 미만의 자는 처벌하지 않고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종경(從輕)하여 처벌하거나 감경(減輕)하여 처벌하는데, 우리나라의 형법규정과 달리 14세 미만의 자인 경우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소년의 연령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범칙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 경우와 다르다.<sup>24)</sup>

한편 종경(從輕)처벌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중국법률상의 특색 있는 양형(量刑)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형법에서 말하는 종경처벌은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범죄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형종(刑種) 또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짧은 형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sup>25)</sup>

#### 다. 정신병자의 치안관리위반 처리

치안관리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정신병자가 변별할 수 없거나 자기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때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지 않지만 그 보호자에게 엄히 보호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인 정신병자가 정신이 정상일 때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는 처벌하여야 한다.

23)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221-225면.

24) 김형훈, 방법기본법, 경찰대학, 2003, 195면.

25) 이진권, “中國 刑法에서의 量刑情節에 관한 考察”,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2002, 238-239면.

본 조항은 정신병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나라의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도 심신상실자를 별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법은 동조 제2항에서 심신미약자의 경우에는 감경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변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인 정신병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대비된다.

#### 라. 맹인 또는 농아자의 치안관리위반 처리

치안관리처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맹인 혹은 농아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종경(從輕), 감경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조항도 책임능력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 제11조에서 맹아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경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적 감경사유로 한데 비하여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맹인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sup>26)</sup>

#### 마. 주취자의 처리

치안관리처벌법 제15조에 의하면 주취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야 한다.

주취자가 주취상태에서 자신에게 위험하거나 타인의 인신, 재산 또는 공공안전에 위험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술이 깰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규정은 주취자의 치안관리위반책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량의 음주로 인한 명정(酩酊)상태에서 행한 범죄는 심신상실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벌할 수 없으나 자신의 심신장애의 상태 하에서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하리라는 것을 인식·인용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신장애상태를 스스로 자유롭게 야기한 경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문제가 되어 그 책임이 문제된다. 그런데 본 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주취자에 대하여 경찰상

26)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농아교육의 발달과 함께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농아자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삭제하지는 규정이 지배적이다. 임웅, 전계서, 281면.

즉시강제의 한 종류로<sup>27)</sup>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경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중국의 경우는 술이 깬 때까지라고 규정한 점이 대비된다.

#### 바. 두 종류 이상의 치안관리위반행위의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16조에 의하면 두 종류 이상의 치안관리위반행위는 분별하여 결정하고 합병하여 집행한다. 행정구류처벌을 합병하여 집행할 때에는 최장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은 수개의 치안관리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수죄의 처벌에 대하여 병과주의, 가중주의 그리고 흡수주의가 있는데<sup>28)</sup>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병과주의를 취하되 행정구류의 경우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치안관리처벌조례가 이 경우 최고한도를 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여 개선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사. 공동으로 치안관리위반한 경우의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17조에 의하면 공동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치안관리위반행위자의 치안관리위반행위 중의 작용에 따라 분별하여 처벌한다.

타인을 교사, 협박, 유혹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하게 한 경우 그 교사, 협박, 유혹한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항은 일종의 공범 처벌기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중의 한 행위가 실행행위에 대하여 교사, 협박, 유혹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규정인데 그 기준은 다시 치안관리처벌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중(從重)처벌한다. 중중(從重)처벌 역시 중경(從輕)처벌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양형방법으로서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범죄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적 무거운 형종 또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긴 형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27) 박상용 외, 경찰관직무집행법해설, 경찰청, 2001, 48면.

28) 손동권, 형법총론, 을국출판사, 2006, 611-612면.

### 아. 기관·단체의 치안관리위반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18조에 의하면 기관·단체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그 직접적인 주관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자를 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법률·행정법규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기관·단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항은 다른 특별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인과 같은 자연인이 아닌 주체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처벌의 종류로 경고, 과태료, 행정구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경고와 행정구류는 그 성질상 자연인이 아닌 자에게 행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주관책임자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자. 감경처벌하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제19조에 의하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이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감경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 ① 치안관리위반행위의 정상(情狀)이 특별히 경미한 경우
- ② 주동적으로 위법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감경시키고 아울러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경우
- ③ 타인이 협박하거나 유혹하여 발생한 경우
- ④ 주동적으로 신고하여 공안기관에 자기의 위법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경우
- ⑤ 입공(立功)이 있는 경우

본 조항은 치안관리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감면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항에 의해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치안관리위반행위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큰 경우나 위반행위 후 사후 수습노력이나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입공(立功)이란 중국형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인이 타인의 범죄행위를 밝히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 다른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sup>29)</sup>

#### 차. 중중(從重)처벌의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제20조에 의하면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중중(從重)처벌한다.

- ① 비교적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② 타인을 교사, 협박 유혹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하게 한 경우
- ③ 신고자, 고소인, 참고인, 증인에게 보복한 경우
- ④ 6개월 내 이미 치안관리처벌을 받았던 경우

본 조항은 치안관리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중중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항에 의해 중중(從重)처벌하는 경우는 결과가 중하거나 행위방법이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이거나 치안관리를 위반한 후 신고자, 고소인, 참고인과 증인에 대하여 보복하여 비난가능성도 크고 공안기관이 정상적인 치안관리처벌을 하는데 장애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상습적인 치안관리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을 엄중히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카. 행정구류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제21조에 의하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본법에 따라 행정구류처벌을 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구류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 ①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 ②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로서 처음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 ③ 70세 이상인 경우
- ④ 임신하고 있거나 자기의 1세 미만의 영아를 수유하고 있는 경우

29) 陳興良, 規範刑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3. 243面.

본 조항은 행정구류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규정인데 행정구류는 인신의 자유를 단기간 박탈하는 처벌로서 결국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이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개선과 교육, 연장자, 출산한 부녀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인도적인 성격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타. 시 효

치안관리처벌법 제22조에 의하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6개월 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의 기한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연속 또는 계속상태에 있는 경우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본 조항은 치안관리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시효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상의 이러한 처벌시효는 그 취지가 공소시효를 둔 취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제3절 치안관리위반행위의 종류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3장에서는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와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4개의 절로 나뉜다. 4개의 절은 각각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인신에 관한 권리·재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사회의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1. 공공질서문란행위와 처벌

##### 가. 일반적 공공질서문란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고 혹은 2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기관, 단체, 기업, 사업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근무, 생산, 영업, 의료, 교학(敎學), 과학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로서 엄중한 손실을 끼친 않은 경우
- ② 터미널, 항구, 부두, 공항, 시장, 공원, 전시장 또는 기타 공공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③ 공공버스, 전차, 기차,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공공교통수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④ 차량 선박, 항공기 및 기타 교통수단을 불법으로 가로 막거나 강제로 탑승하거나 몰래 무임승차하여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끼친 경우
- ⑤ 법에 의해 진행되는 선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무리를 지어 위 행위를 실시한 경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중국의 형법 제290조의 다중사회질서문란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동조에서는 다중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그 정상(情狀)이 엄중하여 근무, 생산, 영업과 교학, 과학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로서 엄중한 손실을 끼친 경우를 처벌하는 죄로서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과 비교할 때 첫째, 엄중한 손실을 끼쳤는지의 여부 둘째, 조직적으로 실시하여 지휘자가 있고 적극적인 추종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중국 형법 제290조의 다중사회질서문란죄가 되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의 치안관리위반행위가 되는 것이다.<sup>30)</sup> 이처럼 치안관리처벌법은 형법상의 어느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회적 위험성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본 조항의 각 행위는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할 때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상의 새치기, 무임승차,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위반행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30)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62-63면.

규정형태가 구체적이지 않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라는 표현방식처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는 넓지만 명확성의 원칙에는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론 경찰에게 일반적 수권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 나. 대형 다중활동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24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 체육 등 대형 다중활동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경고 또는 2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장내에 강제로 진입한 경우
- ② 규정을 위반하여 장내에서 연화(煙花)폭죽 또는 기타 물품에 함부로 불을 붙여 터뜨리는 경우
- ③ 모욕적인 표어, 현수막 등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 ④ 심판원, 운동선수 또는 기타 근무자를 포위하여 공격하는 경우
- ⑤ 장내에 물건을 투척하고 제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⑥ 대형 다중활동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기타 행위

체육경기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구류처벌을 받은 경우 12개월 내에는 체육관에 같은 종류의 경기를 보기위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체육경기장에 진입한 경우 강제로 현장에서 퇴출시킨다.

본 조항은 우리나라 경찰업무 중 혼잡경비<sup>31)</sup>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색 있는 사항은 본 조항에 위반하여 구류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은 체육관에서 같은 종류의 경기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방성격의 출입금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강제로 현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점이

31) 혼잡경비란 경축·기념행사, 각종 대회, 제례·종교행사 및 각종 귀성 등 일시에 몰려든 미조직 군중의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조치하여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이는 경비실무, 경찰종합학교, 2001. 65면.

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찰은 다중이 밀집한 혼잡경비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행위를 범칙행위로 통고처분할 수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고를 발하거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 또는 피난시키는 것, 관리자 또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처럼 경찰의 결정으로 치안관리처벌을 하거나 출입금지명령을 하게 하는 등의 수단은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갈수로 대형행사와 공연, 경기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대형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관련법규의 적극적인 개정을 통해 혼잡경비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다. 유언비어, 특수한 위험한 상황, 위험물질과 관련하여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위험한 정황, 질병의 상황, 경찰의 상황을 거짓으로 퍼뜨리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② 허위의 폭발성, 독성(毒性),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퍼뜨려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③ 방화, 폭발, 위험물질투입을 호언(豪言)하며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본 조항 중 ①은 경찰상 긴급상황 발생시 허위사실이나 소문, 유언비어의 확산은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경찰의 신속한 질서유지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②, ③은 실제로 허위가 아닌 위험

한 물질을 퍼뜨리거나 방화한 경우가 아니라 허위의 물질을 퍼뜨리거나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고 말로만 호언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행위<sup>32)</sup>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과 유사한 법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 라. 행패를 부리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패싸움을 하는 경우
- ② 타인을 따라다니거나 가로막는 경우
- ③ 공적(公的)·사적(私的) 재물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억지로 요구하거나 임의로 손괴, 점용하는 경우
- ④ 기타 행패를 부리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행위

중국형법 제292조에 의하면 패를 결성하여 상호 집단적으로 싸움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집단패싸움죄(聚衆斗毆罪)가 있다.<sup>33)</sup> 그런데 조직적으로 지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본 조항 ①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이 가능하므로 중국 형법 제292조의 보충적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②는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조성행위와 유사하고 ③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sup>34)</sup> 우리나라 형법상의 손괴죄나 공용물파괴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이외에도 ④에 의해 폭행으로 공중의 질서를 해

3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에 의하면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대상행위가 된다.

33) 周光權, 刑法各論講義, 清華大學出版社, 2003, 393面.

34) 원문의 표현 중 '強拿硬要'의 해석에 관하여 이를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지만 불법취득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周光權, 전거서, 396面.

35) 재물손괴죄의 행위태양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여기서 손괴를 행위객체에 직접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손괴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문의 '強拿硬要' '任意損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손동권, 형

치는 다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 적용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마. 사교(邪教), 회도문(會道門), 미신과 관련하여 또는 종교, 기공(氣功)을 모용하여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27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타인을 조직, 교사, 협박, 유혹, 선동하여 사교, 회도문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또는 사교, 회도문, 미신활동을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한 경우
- ② 종교, 기공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한 경우

본 조항은 사이비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미신요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사교로 지칭되는 것에는 ‘呼喊派’, ‘新約教會’, ‘觀音法門’, ‘靈仙眞佛宗’, ‘天父的女兒’, ‘門徒會’, ‘法輪功’ 등이 있다.<sup>36)</sup> 이 중 ‘法輪功’은 최근 중국 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대처하여 강력히 단속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회도문은 會門과 道門

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503면.

36)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게서, 82면.

37) 파룬공(法輪功) 수련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초기 중국 당국은 李洪志 선생을 표창하고, 파룬공은 국가를 위하여 백 가지 이로운 점은 있어도 단 한 가지도 해로운 점이 없다고 극찬하면서 파룬공 수련을 적극 권장했으나, 파룬공 수련자 수가 공산당원 수(5,600만명)를 능가하자, 전 국가 주석 장쩌민(江澤民)과 중국 공산당은 파룬공을 탄압하기로 결탁하고, 전문 탄압조직인 ‘610사무실’을 결성한 뒤, 1999년 7월 20일부터 잔혹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3,500만명에 달하는 수련자를 조사, 심문하고 그 중 수십만 명을 체포하여 강제노동교양소에 복역시키는 한편, 6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수련생들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켜 약물실험대상으로 삼는 등 가혹한 고문을 자행하여 고문 도중 사망한 수련생은 2006. 5. 10. 현재 2,870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사망자는 수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합뉴스보도자료(2006. 5.1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

등 중국의 봉건미신조직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는 ‘一貫道’, ‘九宮道’, ‘先天道’, ‘後天道’, ‘大刀會’ 등이 있다.<sup>38)</sup>

#### 바. 전파를 방해하여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28조에 의하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전파업무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전파국에 대하여 유해한 방해를 하여 주관부서의 지적을 받은 후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부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본 조항은 중국 형법 제288조의 전파통신관리방해죄의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파통신을 방해하여 엄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을 적용하여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sup>39)</sup>

#### 사. 컴퓨터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29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 ①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위해를 조성한 경우
- ②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성능에 대하여 삭제, 수정, 추가, 방해하여 컴퓨터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 ③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컴퓨터정보시스템에서 보관, 처리, 전달하는 데이터와 응용절차에 대하여 삭제, 수정, 추가한 경우
- ④ 고의로 컴퓨터바이러스 등 파괴성 프로그램을 제작, 전파하여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에 영향을 끼친 경우

0000134764&section\_id=0&menu\_id=0 2006.11.22.

38) 중국의 사교와 회도문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何秉松, 恐怖主義·邪教·黑社會, 群眾出版社, 2001, 188-292面. 何秉松은 회도문을 중국의 봉건적 사교로 본다.

39)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85면.

본 조항에서 말하는 국가규정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컴퓨터정보시스템안전보호조례(中華人民共和國計算機信息系統安全保護條例)가 있다. 본 조항은 중국 형법 제285조의 불법 컴퓨터정보시스템침입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불법컴퓨터정보시스템침입죄는 객체가 국가사무, 국방사무, 첨단과학기술영역의 컴퓨터정보시스템이며 침입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는 거동범인데 비하여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불법컴퓨터정보시스템침입행위는 객체가 위 형법상 불법컴퓨터정보시스템침입죄의 객체 이외의 기타 컴퓨터정보시스템이며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를 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40)</sup>

## 2. 공공안전방해행위와 처벌

### 가. 위험물질로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30조에 의하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제조, 매매, 보관, 운수, 우송, 휴대, 사용, 제공, 처리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본 조항은 중국 형법 각칙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 중 제6절 환경자원파괴죄의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오염사고의 결과가 중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본 치안관리처벌법을 적용하여 본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만으로도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나. 위험물질의 관리소홀의 보고와 관련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31조에 의하면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물질 또는 전염병병원체 등 위험물질이 도난, 강탈당하거나 분실되었는데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고의로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40) 周光權, 전계서, 385面.

본 조항은 위험물질의 관리소홀로 도난, 강탈, 분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사후 대책을 세우기 곤란하도록 보고를 누락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가중처벌한다.

#### 다. 통제기구(統制器具)와 관련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32조에 의하면 불법으로 총기, 탄약 또는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통제기구(統制器具)를 휴대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경고 또는 2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불법으로 총기, 탄약 또는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통제기구를 휴대하고 공공장소 또는 공공교통수단에 탑승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중국 형법 제130조의 불법으로 총기·탄약·도검을 휴대하고 공공장소나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후자는 공공장소 또는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한 행위로서 정상(情狀)이 엄중하여 형법상 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행위는 휴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되 공공장소 또는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한 행위가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이 있다.

#### 라. 중요시설을 침해하여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33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 ① 유류가스관시설, 전력전신시설, 방송시설, 수해방지시설 또는 수문(水文)감측, 측량, 기상예보, 환경감측, 지질감측, 지진감측 등 공공시설을 절취, 훼손한 경우
- ② 국가변경(邊境)지역의 경계비, 경계석 및 기타 변경의 표지, 변경(邊境)시설 또는 영토, 영해표지시설을 이동, 훼손한 경우

- ③ 불법으로 국경선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거나 국경관리에 장애가 있는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본 조항의 ①은 중국 형법 제118조와 제119조의 전력·설비파괴죄와 124조의 방송시설·전화시설파괴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후자들은 위해의 결과발생을 요한다. 즉 인명의 사상이나 재산의 손실이 있는 정도가 엄중할 경우 중국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조를 적용한다. ②는 중국 형법323조의 국경경계비·경계석파괴죄와 구별을 요하는데 수차 파괴행위가 있거나 죄질이 엄중한 경우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본조를 적용한다.

#### 마. 항공기와 관련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중인 항공시설을 절취, 훼손, 임의 이동하거나 항공기의 조종실에 무단진입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사용중인 항공기상에서 항공시스템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 공구를 사용하고 제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 5일 이상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항은 항공기 내에서도 공항에서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항공기 내에서 항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본 조항에 의하여 경찰이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

#### 바. 철도운송과 관련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35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철도시설, 설비, 기차차량부속 또는 안전표지를 절취, 훼손 또는 임의 이동시키는 경우
- ② 철도노선상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고의로 열차를 향해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

- ③ 철도노선, 교량, 배수로에 웅덩이를 파거나 돌을 채취하거나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 ④ 철도노선상에 건널목 또는 통행로를 사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본 조항은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여 철도상의 대형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36조에 의하면 철도방호망 내로 무단진입하거나 기차가 도착시 철도노선위로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넘어가 철도운행의 안전에 영향을 끼친 경우 경고 또는 2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항 역시 치안관리처벌법 제35조와 같이 철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사. 전기철조망, 노면시공, 노면시설과 관련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37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철조망을 설치, 사용하거나 설치, 사용한 전기철조망이 안전 규정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차량, 행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시공할 때 웅덩이를 파고 덮개, 울타리, 경고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노면의 맨홀덮개, 조명 등 공공시설을 절취, 훼손한 경우

본 조항은 행인이 보도를 걷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전할 때 전기철조망이나 웅덩이, 맨홀 등의 안전시설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나 운전자를 보호하고 경찰이 위험한 행위를 한 자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아. 대형종합행사 개최 관련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38조에 의하면 문화, 체육 등 대형 다중활동을 개최하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활동을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즉시 해산시킨다. 행사의 기획자에게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항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체육행사 등에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주최자에게 추가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정지명령을 하고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자. 사회대중활동장소의 안전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39조에 의하면 여관, 호텔, 극장, 오락장, 운동장, 전시장 또는 기타 사회대중활동에 이용되는 장소의 경영관리자가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장소에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켜 공안기관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본 조항은 다중의 이용이 많은 업소나 시설의 경영관리자가 위험의 방지를 위한 공안기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으로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3. 인신에 관한 권리, 재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와 처벌

#### 가. 타인의 인신권리를 침해한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40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

태료를 병과한다.

- ① 16세 미만의 자 또는 장애인을 조직, 협박, 유혹하여 공포(恐怖)적이거나 잔인한 연기를 하게 한 경우
- ②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타인에게 노동을 강요한 경우
- ③ 불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고, 불법으로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한 경우

본 조항 중 ①은 중국의 공안부(公安部)와 문화부(文化部)가 공동으로 반포한 '기예인과 서커스단의 공포스러운 연기와 소년을 착취하는 프로그램의 단속에 관한 결정'과 '치안관리처벌조례'에서 이미 이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치안관리처벌법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②에서는 중국 형법 제244조의 근로자노동강요죄와 구분해야 하는데 이 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노동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노동을 강요하여 그 정상(情狀)이 엄중한 것으로 만약 그 정상(情狀)이 엄중하지 않다면 중국 형법 제244조를 적용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고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을 적용하여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 한편 본 조항의 ③은 중국 형법 제238조의 불법감금죄, 중국 형법 제245조의 불법수색죄 및 불법주택침입죄와 구분하여야 하는데 불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한 행위와 주거침입 및 수색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 수단, 위험성의 대소(大小) 또는 제한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상(情狀)이 중하면 중국 형법상의 불법감금죄, 불법주택침입죄, 불법수색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sup>41)</sup>

#### 나. 구걸과 관련 인신권리를 침해한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41조에 의하면 타인을 협박, 유혹 또는 이용하여 구걸하게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41)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게서, 110-115면.

타인을 반복하여 따라다니거나 타인에게 구걸을 강요하거나 기타 타인에게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구걸하게 하는 경우 5일이하의 구류 또는 경고에 처한다.

본 조항은 구걸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상에도 ‘구걸부당이득’행위를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3호는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게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두 행위로 구분하여 처벌의 경중을 달리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자신의 구걸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타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 다.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거나 모욕비방, 무고, 보복공격, 타인에 대한 정상적 생활방해, 타인의 사생활침범 등 행위와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겁을 주는 편지를 쓰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②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 ③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무고하거나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치안관리처벌을 받도록 기도(企圖)하는 경우
- ④ 증인 및 그 근친에 대하여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공격을 하는 경우
- ⑤ 수차 음란하거나 모욕적이거나 공포적(恐怖的) 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발송하여 타인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한 경우
- ⑥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시키는 경우

본 조항의 ③은 중국 형법 제243조의 무고죄와 비교하여 보면 무고죄는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무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행위가 그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본 조항의 경우는 그 행위가 엄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정상(情

狀)이 엄중한지의 여부에 따라 본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중국 형법상의 무고죄를 적용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본 조항의 ④는 중국 형법 제308조의 증인공격보복죄와 비교하여 보면 본 조항은 증인 이외에 그와 가까운 친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그 행위의 정상(情狀)이 엄중하지 않은 점이라고 하겠다. 본 조항의 ⑤와 유사한 조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힌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본 조항 ⑥의 처벌대상 행위는 몰래 엿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시키는 행위로서 그 보호법익은 통신의 비밀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보호법익보다 더 넓다고 하겠다.

#### 라. 타인을 구타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에 의하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 ① 무리지어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하는 경우
- ②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의 자 또는 60세 이상의 자를 구타, 상해하는 경우
- ③ 타인을 수차 구타, 상해하거나 수인을 1회 구타, 상해하는 경우

본 조항은 타인에 대한 구타, 상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서 구타는 상해의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타행위가 있으면 본 조항의 치안관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조항의 상해행위와 중국 형법 제234조의 고의상해죄와의 구별이 필요한데 상해의 결과에 따라 구분된다고 사료된다. 즉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본 조항의 치안관리위반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치안관리처벌을 한다.<sup>42)</sup> 또한 본 조항에서는 구타와 상해행

위의 비난가능성이 더 많은 3가지 행위에 대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더 중하게 하고 있다.

#### 마.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가 정상(情狀)이 악렬(惡劣)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지체장애인, 정신병자, 14세 미만의 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엄중한 정상(情狀)이 있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본 조항은 타인에게 추행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신체노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도 과다노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본 조항은 행위의 객체에 따라 그 처벌을 중하게 하고 있다.

#### 바. 가정학대, 유기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45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경고에 처한다.

- ① 가족을 학대하여 피학대자가 처리를 요구한 경우
- ②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유기한 경우

본 조항은 학대행위와 유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중국 형법 제260조의 학대죄 및 제261조의 유기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차이점은 그 행위의 정상(情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수단과 기간, 결과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상(情狀)이 악렬한 경우는 중국 형법상의 학대죄 또는 유기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2)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126면.

### 사. 교역을 강요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46조에 의하면 물품의 구매 또는 판매를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항은 교역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중국 형법 제226조의 교역강요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교역강요죄는 폭력, 협박의 수단을 필요로 하며 그 정상(情狀)이 엄중할 것을 요함이 본 조항과 다르다고 본다.<sup>43)</sup>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0호에서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행위는 물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아. 민족에게 원한, 질시, 모욕을 조성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47조에 의하면 민족원한, 민족질시를 선동하거나 출판물, 컴퓨터정보망에 민족질시, 모욕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규정으로 다민족간의 이간과 반목을 예방하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중국 형법 제249조와 제250조에서도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각각 민족의 원한·질시선동죄와 출판물에 의한 소수민족 질시·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과의 차이점은 그 행위의 정상(情狀)이 어떠한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즉, 반복성,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정상(情狀)이 엄중하면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43) 高銘暄·馬克昌, 刑法學(下編), 中國法制出版社, 1999. 800面.

44)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그 중 한족(漢族)이 91.96%를 차지하고 있다. 劉茂林, 전계서, 165면.

45)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132-133면.

조항을 적용하여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

#### 자. 타인의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48조에 의하면 신분을 가장하여 타인의 우편물을 수령·은닉·훤기·임의개봉 또는 불법으로 검사하는 경우 5일 이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항은 타인의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중국 형법 제252조의 통신자유침해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는 형법상의 통신자유침해죄에 해당하며, 제253조의 우편물·전보의 임의 개봉·은닉·훤기죄와의 구별에 대해 살펴보면 형법상의 죄는 특수한 주체로서 우체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되고 있으며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의 행위의 주체는 일반인이다.<sup>46)</sup>

#### 차. 재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49조에 의하면 공적(公的)·사적(私的)재물을 절취·사취·갈취·강취 또는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재산에 관한 죄 중 절도죄·사기죄·공갈죄·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절취행위·사취행위·갈취행위·강취행위가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4. 사회관리방해행위와 처벌

#### 가.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경고 또는 2백위엔

46)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135면.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인민정부가 긴급상태하에서 법에 따라 반포한 결정,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 경우
- ②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③ 긴급한 임무를 집행하는 소방차, 구호차, 공사장긴급구조차, 경찰차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경우
- ④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지역에 강제로 진입하는 경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중중(從重)처벌한다.

본 조항은 국가가 긴급상황하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태를 진정시키고 치안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항 중 ①은 긴급상황 하에서의 경찰하명에 대한 국민들의 수인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②는 중국 형법 제277조의 공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회적 위험성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자에게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에서도 본 조항의 ④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 나. 신분을 가장하여 기망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5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기타 허위의 신분으로 기망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군인·경찰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경우, 중중(從重)처벌한다.

본 조항은 신분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인이나 경찰관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8호에서 관명사칭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즉,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

장·학위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 다. 증명과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52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사업체 또는 기타 조직의 공문, 증서, 증명문건, 인장을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하는 경우
- ② 위조, 변조한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사업체 또는 기타 조직의 공문, 증서, 증명문건을 매매 또는 사용한 경우
- ③ 차표, 배표, 항공권, 문예연출관람표, 체육경기입장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 영수증을 위조, 변조, 사재기하는 경우
- ④ 선박번호판을 위조, 변조하고, 위조, 변조한 선박번호판을 매매 또는 사용하거나 선박의 엔진번호를 지워 개조한 경우

본 조항은 각종 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소위 가짜 짝퉁상품은 물론 증명서의 위조, 변조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위조, 변조가 성행하고 있다.<sup>47)</sup>

#### 라. 선박과 관련 수역, 도서(島嶼)관리를 위반한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53조에 의하면 선박이 국가가 진입을 금지, 제한하는 수역 또는 도서에 함부로 진입하거나 정박하는 경우 선박의 책임자 및 관련책임자에게 5백위엔 이상

47) <http://blog.daum.net/kurtbae/7552713>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275889&section\\_id=102&menu\\_id=](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275889&section_id=102&menu_id=) (튀든지 위조 영어성적표에서 학위까지) 2006.11.23.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마. 사회단체·특허에 대한 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54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사회단체명의로 활동하고, 단속되고도 여전히 활동하는 경우
- ② 법에 따라 등기가 취소된 사회단체가 여전히 사회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 ③ 국가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경영하는 경우

위 ③의 행위가 있는 경우 단속한다.

공안기관의 허가를 득한 경영자가 국가의 관련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공안기관은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본 조항은 사회단체의 관리와 공안기관의 허가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바. 불법집회, 행진, 시위행위와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55조에 의하면 불법집회, 행진, 시위를 선동, 계획하고 제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본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중화인민공화국집회행진시위법'이 있다. 이러한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본 조항에 따라 치안관리처벌

을 할 수 있다.

#### 사. 여관업근무자가 법정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56조에 의하면 여관업의 근무자는 투숙한 고객에 대하여 규정대로 성명, 신분증종류와 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투숙한 여객이 위험물질을 휴대하고 여관에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여관업의 근무자가 투숙한 여객이 범죄혐의자 또는 공안기관에 의해 수배된 자임을 알면서도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중국의 숙박업종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범죄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숙박업소에서 행해지고 또 범죄혐의자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종류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종의 '불고지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아. 주택임대와 관련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57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인이 신분증이 없는 자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성명, 신분증종류와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주택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범죄활동을 하려고 함을 알면서도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신분증의 관리에 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혐의자들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경제활동에도 공안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도 일종의 '불고지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자. 사회생활상의 소음과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58조에 의하면 사회생활상의 소음공해방지와 관련된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한 자는 경고에 처하고, 경고 후 개선하지 않은 경우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항은 현대의 사회생활 중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과태료나 구류처분을 하지 않고 우선 경고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이 다른 조항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범칙금을 과하는 통고처분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차. 전당포업과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한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59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 ① 전당포업근무자가 물품을 접수하면서 관련증명을 조사하지 않고, 기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혐의자, 장물임을 명백히 알면서公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②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철로, 유전, 전기공급, 전신, 광산, 수리, 측량과 도시공용시설 등 중고특별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 ③ 公安기관이 심사를 통보한 장물 또는 장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④ 국가가 구매를 금지한 기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본 조항은 각종 범죄혐의자나 장물 등이 전당포를 통해 유통되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항에서도 일종의 '불고지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당포영업법이 1999년 3월 폐지되면서 전당포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되었으나 2002년부터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8호는 전당포업자가 아닌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을 범칙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다.

### 카. 증거, 재물압수, 범죄인의 보호관찰, 형사조치를 당하는 자와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60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 ① 행정집행기관이 법에 의해 압수, 봉인, 동결한 재물을 은닉, 이전, 판매한 경우
- ② 증거를 위조, 은닉, 멸실시키거나 허위증언, 허위신고로 행정집행기관의 법집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 ③ 장물임을 명백히 알면서 보관, 이전 또는 대리판매한 경우
- ④ 법에 의해 관제(官制), 정치권리박탈 또는 집행유예, 치료감호 등 사회내 처우중인 죄인 또는 법에 의해 형사강제조치를 받는 자가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공안부문의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본 조항의 ①은 중국 형법 제314조의 압수·봉인·동결한 재물의 불법처치죄, ②는 중국 형법 제307조의 증거인멸방조죄와 증거위조방조죄, ③은 중국 형법 제312조의 장물의 보관·이전·매입·판매죄와 구별을 요한다. 모두 그 행위의 정상(情狀)이 엄중하지 않은 경우는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1호는 정신병자 자신이 아니라 그를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타. 국경을 월경하여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61조에 의하면 타인이 국경을 월경하도록 기획하는데 협조하거나 타인을 몰래 국외로 이송시키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위엔 이상 5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본 조항은 타인이 불법으로 중국의 국경을 넘는 일을 기획하거나 타인을 불법으로 국외로 이송시키는 일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전자는 중국 형법 제318조의 타인에 대한 월경기획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 대한 월경기획죄는 7가지의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이러한 유인, 선동 등 적극적이며 조직적인 행위가 없이 협조하는데 그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중국 형법 제321조의 타인에 대한 국외이송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 대한 국외이송죄는 4가지의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이러한 행위가 그 정상(情狀)이 엄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외이송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형법 제289조의 제2항은 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점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62조에 의하면 국경을 넘는 자를 방조하는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상 2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본 조항도 불법으로 중국의 국경을 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치안관리처벌법 제61조의 전단부 규정과 다른 점은 방조행위의 대상이다. 즉 치안관리처벌법 제61조 전단부의 협조대상은 타인이 국경을 넘도록 기획하는 자이고, 제62조의 방조의 대상은 직접 국경을 넘는 자이다.<sup>48)</sup>

#### 파. 문물(文物), 고적(古蹟) 보호와 관련하여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63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경고 또는 2백위엔

48)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171면.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중할 때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 ① 줄을 긋거나 색을 칠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고의로 국가가 보호하는 문물, 명승고적을 훼손하는 경우
- ②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문물보호기관 부근에서 폭파, 채굴 등 활동을 하여 문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본 조항은 중국의 문물(文物) 또는 명승고적(名勝古蹟)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다. 위 ①은 중국 형법 제324조의 고의문물훼손죄·고의명승고적훼손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조항의 문물훼손행위는 그 대상이 일반적인 문물이든,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문물이든 모두 포함되나 중국 형법상의 고의문물훼손죄는 고의로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문물만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본 조항의 명승고적훼손행위와 중국 형법상의 고의명승고적훼손죄는 그 행위의 정상(情狀)이 엄중한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sup>49)</sup>

하. 타인의 운송수단을 몰래 운전하거나 무면허 운전하는 행위와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64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 ① 타인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는 경우
- ②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타인의 항공기, 선박을 몰래 조종하는 경우

본 조항은 타인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거나 무면허상태로 타인의 항공기, 선박을 몰래 조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일종의 사용절도<sup>50)</sup>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우

49) 周光權, 전거서, 447-449면.

50)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305면.

리나라 형법에도 제331조의 2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를 불법사용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가. 분묘, 유골, 골분, 사체와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65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타인의 분묘를 고의로 파괴, 오손하거나 타인의 유골, 골분을 고의로 훼손 또는 버리는 경우
- ② 공공장소에 사체를 방치하거나 사체의 방치로 인하여 타인의 정상적 생활, 근무환경에 영향을 끼치면서 제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본 조항은 타인의 분묘, 유골, 사체 등에 관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7호에서 사체에 대한 은닉 또는 현장변경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방치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형법 제161조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분묘를 발굴하여 앞의 행위를 범한 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유기란 종교적·사회적 관례상 매장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체 등을 방기하는 행위를 말한다.<sup>51)</sup>

#### 나. 매춘행위와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에 의하면 매춘, 성구매의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1) 임웅, 형법각론, 752면.

본 조항은 소위 매매춘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중국 형법은 각칙 제5장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죄 제9절에서 매매춘과 관련된 죄를 규정하고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처럼 단순 매매춘과 성구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sup>52)</sup> 따라서 단순매매춘 또는 단순성구매행위는 본 조항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 다. 매음(賣淫)을 유인·수용·소개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67조에 의하면 타인의 매음을 유인·수용·소개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항은 매음(賣淫)행위를 유인하거나 수용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중국 형법 제359조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행위가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는 중국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안관리처벌을 한다.<sup>53)</sup>

#### 라. 음란물품, 음란정보와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68조에 의하면 음란한 서적, 도화, 영화, 음향제품 등 음란물품을 제작, 운수, 복제, 판매, 대여하거나 컴퓨터정보망, 전화 및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음란정보를 전파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3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항은 음란물품 또는 정보를 제작, 유통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중국 형법 제363조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중국 형법상의 범죄는 이러한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고 그 행위의 정상(情狀)이 엄중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본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이 아니거나 그 행위의 정상(情狀)이 엄중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sup>54)</sup>

52) 高銘暄, 刑法學, 北京大學出版社, 1998, 531-535面.

53)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게서, 181면.

마. 음란한 영상물, 음란한 연기, 다중음란과 관련하여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 ① 음란한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방영하는 경우
- ② 음란한 공연을 조직하거나 진행하는 경우
- ③ 다중음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타인이 위의 활동에 참여함을 명백히 알면서 그를 위해 방조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항은 중국 형법상의 관련범죄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된다. 본 조항 중 ①은 중국 형법 제364조의 음란영상물방영조직죄에 해당하는 행위 중 그 정상(情狀)이 엄중하지 않은 경우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고, ②는 중국 형법 제365조의 음란공연조직죄에 해당하는 행위 중 그 정상(情狀)이 경미한 경우는 본 조항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③은 중국 형법 제411조의 다중음란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다중음란죄의 주체는 다중음란행위중의 주동자와 수차례 다중음란행위에 참여한 상습행위자이며 그 외의 일반적 참가자는 본 조항의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sup>54)</sup>

한편 위 3가지 행위에 방조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소위 그 실행행위자의 처벌과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일반적으로 중범의 처벌은 그 정범에 비하여 감경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바. 도박과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70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방조하는 경우 또는 참여한

54) 周光權, 전계서, 500면.

55)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187면.

도박의 판돈이 큰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상 3천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항은 중국 형법 제413조의 도박죄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되지 않을 때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조항의 도박방조행위와 중국 형법상의 도박죄의 공범 즉 도박죄의 방조범과의 구별이 필요한데 도박을 방조하였는데 그 실행행위자가 도박죄의 정범에 해당되면 그 방조자는 도박죄의 공범 즉 도박죄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 방조를 받은 도박행위자의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되지 않을 때 그 방조행위자는 본 조항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실패한 방조와 효과없는 방조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미수는 물론이고 예비 또는 음모로도 처벌되진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데,<sup>56)</sup> 중국의 경우는 본 조항에 따라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어 도박에 대한 방조행위 규제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샤. 마약의 원식물과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71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3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5백 그루 미만의 양귀비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경우
- ② 소량의 비활성화 되지 않은 양귀비 등 마약원식물의 종자 또는 어린모를 불법으로 매매, 운수, 휴대, 소지하는 경우
- ③ 소량의 양귀비껍질을 불법으로 운수, 매매, 보관, 사용하는 경우

위 ①의 행위가 있는 경우 성숙되기 전에 스스로 갈아엎은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마약의 원재료가 되는 식물을 규제하기 위한 처벌규정인데 ①은 중국 형법 제351조의 불법마약원식물재배죄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그 정상(情狀)이 엄중

56)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5, 463면.

하지 않은 경우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고, ②는 중국 형법 제352조의 불법마약원식물의 종자·어린모를 매매·운수·휴대·소지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처벌을 하는 규정이다. 그 구분은 행위객체의 수량이 비교적 많으면 형법상 범죄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 조항에 따른 치안관리위반행위가 된다.<sup>57)</sup>

그리고 ③은 중국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 야. 마약과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천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200그램 미만의 아편, 헤로인 또는 10그램 미만의 메스암페타민 기타 소량의 마약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 ②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경우
- ③ 마약을 흡식, 주사하는 경우
- ④ 의료인을 협박, 기망하여 마취약품, 정신약품의 처방을 받는 경우

본 조항의 ①은 중국 형법 제348조의 불법마약소지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구별기준은 마약의 양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다고 하겠다. 만약 소지하고 있는 마약의 수량이 많다면 즉 아편은 200g 이상이고,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의 양이 10g 이상이라면 중국 형법상의 불법마약소지죄에 따라 최소한 3년 이상의 유기도형(有期徒刑), 구역(拘役), 관제(管制)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는 형벌을 받게 되고 마약의 소지량이 이에 미치지 않아 적다면 본 조항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 조항의 ②는 중국 형법 제347조의 마약판매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마약판매죄는 유상으로 마약을 제공하는 것이고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은 무상으로 마약을 제공하였을 때 적

57)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191면.

용하는 법률이다.

한편 마약과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347조부터 제355조까지 해당하는 범죄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본 조항의 ③과 ④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 자. 타인을 교사·유인·기망하여 마약을 흡식·주사하게 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73조에 의하면 타인을 교사, 유인, 기망하여 마약을 흡식, 주사하게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엔 이상 2천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항은 중국 형법 제353조의 타인에 대한 마약흡식 교사·유인·기망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행위의 정상(情狀)이 현저히 경미하면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으로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 차. 특수한 기관·단체의 구성원이 범죄인을 위해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74조에 의하면 공안기관이 마약흡입, 도박, 매매춘을 수사단속시 여관업, 요식업, 문화오락업, 택시업 등 기관·단체의 구성원이 위법한 범죄인을 위해 내통하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본 조항은 중국 형법 제311조의 범인은닉원조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중국형법상의 범인은닉원조죄는 범인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은닉하거나 원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범인임을 명백히 알고 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을 적용하여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그리고 중국 형법 제362조는 공안기관이 마약흡입, 도박, 매매춘을 수사단속시 여관업, 요식업, 문화오락업, 택시업 등 기관·단체의 구성원이 위법한 범죄인을 위해 내통하여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의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 중국 형법 제311조에 의한 범인은닉원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형법 제362조를 적용할 것인지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상의 본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는 그 행위의 정상(情狀)이 엄중한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 카. 동물사육과 관련하여 사회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와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75조에 의하면 동물을 사육하면서 타인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한 경우 경고에 처한다. 경고 후에도 타인의 정상적 생활을 계속 방해한 경우 또는 동물이 타인에게 위해가 되도록 방임한 경우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물로 하여금 사람을 상해하게 한 경우 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와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에도 본 조항과 유사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제1조 제32호의 위해동물관리소홀행위로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또 하나는 동조 제33호의 동물 등에 의한 행패행위로서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전자는 범칙행위로 통고처분대상이고 후자는 즉결심판청구대상행위이다.

### 타. 사회관리를 방해하여 수회 교육을 해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강제교육조치

치안관리처벌법 제76조에 의하면 본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의 행위가 있어 수회 교육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국가규정에 의해 강제성 교육조치를 취한다.

본법 제67조는 매음(賣淫)을 유인·수용·소개하는 행위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고, 제68조는 음란물품, 음란정보와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며, 제70조는 도박과 관련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습벽을 고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본 조항은 그에 대한 강제성 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제4절 처벌의 절차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4장에서는 치안관리처벌을 과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총 35개 조문이며 각각 조사, 결정 그리고 집행이라는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비하면 대폭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1. 조 사

치안사건의 조사에 관하여는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치안사건의 수리

치안관리처벌법 제77조에 의하면 공안기관이 신고, 고소, 고발 또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의 자수에 대하여 또는 기타 행정주관부문,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위반사건에 대하여 즉시 수리,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찰기관이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소, 고발, 자수, 사건의 이송의 경우 범죄사건부에 기재하고 신고사건은 인지과정을 거쳐 입건하는데 비하여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sup>58)</sup>

#### 나. 접수사건의 처리

치안관리처벌법 제78조에 의하면 공안기관이 신고, 고소, 고발, 자수를 수리한 후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신고인, 고소인, 고발인, 자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58)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제1항.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은 치안종합상황실이나 순찰지구대 등에서 접수기록을 남기는 것을 접수하고 등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법에 따른 조사 증거채집

치안관리처벌법 제79조에 의하면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혹행위를 하거나 위협, 유도, 기망 등 불법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히 금한다.

불법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본 조항은 수사의 진행 및 증거수집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형사소송법 제43조는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와 위협·유도·기망 등의 불법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형법 제247조는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범죄혐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유기도형(有期徒刑)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고의상해죄, 고의살인죄로 중중(從重)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9)</sup>

### 라. 치안사건처리의 기밀사항

치안관리처벌법 제80조에 의하면 공안기관과 그 소속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시 관련된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치안사건의 수사시 비밀의 보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즉, 범죄수사규칙 제9조는 “수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보도기관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유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sup>60)</sup>

중국에서 국가비밀은 “절밀(絕密)”, “기밀(機密)”, “비밀(秘密)”이라는 3등급으로 나뉜다. 절밀은 가장 중요한 국가비밀로서 일단 누설되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특별히 엄중한 손해를 입는 것이고, 기밀은 중요한 국가비밀로서 일단 누설되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엄중한 손해를 입는 것이고, 비밀은 일반적인 국가비밀로서 일단 누설되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손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sup>61)</sup>

59) 王國樞, 刑事訴訟法學, 北京大學出版社, 1998, 162面.

60) 이연수, 범죄수사규칙해설, 박문각, 2000, 37-38면.

### 마. 회피

치안관리처벌법 제81조에 의하면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회피하여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①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일 때
- ②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족과 본 사건이 이해관계에 있을 때
- ③ 본 사건의 당사자와 기타 관계에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때

인민경찰의 회피는 그 소속한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공안기관책임자의 회피는 직근상급공안기관이 결정한다.

본 조항은 공정한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회피제도를 도입한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범죄수사규칙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즉 범죄수사규칙 제14조는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2)</sup> 다만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에는 기관의 책임자까지 회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바. 소환의 방식

치안관리처벌법 제82조에 의하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받을 것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의 사건처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환장을 사용하여 소환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치안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인민경찰이 근무증표를 제시하고 구두로 소환을 할 수 있다. 단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하는 원인과 법적 근거를 피소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피하는 자는 강제소환할 수 있다.

61)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206면.

62) 이연수, 전계서, 44면.

본 조항에 의하면公安기관의 소환방식은 3가지이다. 그것은 서면소환, 구두소환, 강제소환이다. 그런데 강제소환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출석요구제도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관의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으나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상으로는 검사 또는 법원의 통제 없이 독자적 책임하에 강제 처분으로서 강제소환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sup>63)</sup>

#### 사. 소환 및 심문 증거조사의 시간, 통지

치안관리처벌법 제83조에 의하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公安기관은 소환한 후 신속히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심문과 증거조사의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안이 복잡하고 본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문과 증거조사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에 의하면 중국은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최소한 소환 후 8시간까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조사할 수 있으며 구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는 24시간까지公安기관 외부의 다른 통제와 간섭없이 조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석요구에 응해 출석한 피의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임의동행이라 하더라도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과<sup>64)</sup> 비교하면 중국의 경우公安기관이 치안관리처벌을 하는데 있어 매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 심문조서

치안관리처벌법 제84조에 의하면 심문조서는 피심문자에게 건네 옮겨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람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읽어주어야 한다. 조서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피심문자는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63)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처분은 헌법 제12조 1항 후단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강제처분법정주의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중국처럼 경찰이 피의자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141면.

6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불심검문에 이은 임의동행시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있다. 피심문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심문한 인민경찰도 조서상에 서명하여야 한다.

피심문자가 심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서면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요구하면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필요시 인민경찰도 피심문자에게 자술서를 요구할 수 있다.

16세 미만의 치안관리위반행위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입회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인데 이와 유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와 범죄수사규칙 제175조(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소년에 관하여는 범죄수사규칙 제199조에서 소년피의자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함이<sup>65)</sup> 중국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함과 다르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21조는 “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25조에 의해 보호자는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16세 미만의 자를 심문시 보호자가 입회하도록 통지규정을 두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를 하도록 제도화 한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에 대한 심문

치안관리처벌법 제85조에 의하면 인민경찰이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을 심문시 그가 소재하는 기관·단체 또는 그의 거소에 가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그로 하여금 공안기관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경찰이 공안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증인을 심문시에는 그의 근무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을 심문시 본법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5)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제2조에서 “소년이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 소년연령의 범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106면.

### 차. 심문의 언어 및 통역

치안관리처벌법 제86조에 의하면 농아인 치안관리위반행위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을 심문할 경우 수화(手話)가 가능한 자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이를 조서상에 기록하여야 한다.

당해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 문자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치안관리위반행위자, 피해자 또는 기타 증인을 심문할 경우에는 통역자가 있어야 하며 조서상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카. 검사(檢査)

치안관리처벌법 제87조에 의하면 공간기관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와 관련이 있는 장소, 물품, 인신에 대하여 검사(檢査)를 할 수 있다. 검사시 인민경찰은 2인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근무증표와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가 발급한 검사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즉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민경찰은 근무증표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단 공민(公民)의 주거지를 검사할 때에는 현급(縣級) 이상 인민정부의 공간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녀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여성근무자가 하여야 한다.

### 타. 검사조서(檢査調書)

치안관리처벌법 제88조에 의하면 검사한 정황은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사자, 피검사자와 참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피검사자가 서명을 거절할 때에는 인민경찰은 조서상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파. 물품압수

치안관리처벌법 제89조에 의하면 공간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과 관련되어 증거로 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압수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선의의 제3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압수할 수 없으며 이를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물품은 압수할 수 없다.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현장의 참관인 및 압수당한 물품의 소지인과 회동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2부 작성하여 조사자, 참관인과 소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소지인에게, 나머지 1부는 첨부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적절히 보관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기본관이 곤란한 물품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진 것은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타인의 합법적인 재산임이 밝혀진 것은 등기(登記)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거나 권리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경매 하거나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득액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 하. 감정(鑑定)

치안관리처벌법 제90조에 의하면 사건을 밝히기 위하여 사건 중의 쟁점이 되는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파견하거나 초빙하여 감정을 하고 감정인은 감정 후 감정의견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서명하여야 한다.

## 2. 치안관리처벌의 결정

### 가. 치안관리처벌의 주체

치안관리처벌법 제91조에 의하면 치안관리처벌은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정부공안기관이 결정한다. 그 중 경고(警告), 5백위엔 이하의 과태료는 공안파출소(公安派出所)가 결정한다.

### 나. 인신자유의 제한기간은 행정구류기간에 산입

치안관리처벌법 제92조에 의하면 행정구류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 처벌 전

에 이미 강제조치로 인신자유를 제한한 기간은 산입하여야 한다. 인신자유 1일은 행정규류 1일로 계산하여 산입한다.

#### 다. 증거를 중시하고 진술을 가볍게 믿지 않음

치안관리처벌법 제93조에 의하면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본인의 진술이 없으나 기타 증거로 사건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진술만 있고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할 수 없다.

본 조항은 소위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sup>66)</sup>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중국은 형사소송법 제4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sup>67)</sup>

#### 라. 처벌 전의 고지 및 의견청취

치안관리처벌법 제94조에 의하면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치안관리처벌을 하는 사실, 이유,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가 법에 의해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는 진술과 변명할 권리를 갖는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위반 행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고, 치안관리위반행위자가 제시하는 사실, 이유와 증거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치안관리위반행위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포시 소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데 우리나라와의 경우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sup>68)</sup> 여기서 중국의 경우 변호인선임권고지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점

6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570면.

67) 王遠明 외, 刑事訴訟法實例說, 湖南人民出版社, 1999, 84면.

이 다르다. 또한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는 진술과 변명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치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진술거부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sup>69)</sup> 그러나 학계에서는 중국의 형사소송법체계에도 진술거부권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sup>70)</sup>

#### 마. 조사종결 후의 처리

치안관리처벌법 제95조에 의하면 치안사건은 조사종결 후 공안기관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처리한다.

- 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할 위법행위가 확실히 있는 경우, 정상(情狀)의 경중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처벌을 결정한다.
- ②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위법사실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
- ③ 위법행위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주무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는다.
- ④ 치안관리위반행위자에게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치안관리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결정할 때 관련된 행정의 주관부서에 처리를 통지한다.

#### 바. 치안관리처벌결정서

치안관리처벌법 제96조에 의하면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한 경우 치안관리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다음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① 처벌을 받는 자의 성명, 성별, 연령, 신분증의 명칭과 번호, 주소
- ② 위법사실과 증거

68) 이재상, 전거서, 219면.

69) 樊崇義, 刑事訴訟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6, 86面, 중국은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70) 張建良, 刑事強制措施要論,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5, 88面. ; 孫長永, 偵查程序與人權-比較法考察, 中國方正出版社, 2000, 370面.

- ③ 처벌의 종류와 근거
- ④ 처벌의 집행방식과 기한
- ⑤ 처벌결정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신청, 행정소송제기의 경로와 기한
- ⑥ 처벌결정을 한 공안기관의 명칭과 결정한 일시

결정서는 처벌결정을 한 공안기관이 날인한다.

본 조항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할 경우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함과 그 결정서의 내용을 정한 규정이다. 만약 당사자가 이에 불복한다면 치안관리처벌결정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치안관리처벌결정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아무런 불복수단을 행하지 않으면 치안관리처벌의 결정은 확정되며 그 당사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sup>71)</sup>

#### 사. 치안관리처벌결정서의 송달

치안관리처벌법 제97조에 의하면 공안기관은 처벌을 받는 자에게 치안관리처벌결정을 선고하고 아울러 그 현장에서 처벌을 받는 자에게 치안관리처벌결정서를 교부한다. 현장에서 처벌을 받는 자에게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일 내에 처벌을 받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구류처벌의 결정을 한 경우 신속히 처벌을 받는 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부분을 피해자에게 사본으로 보내야 한다.

본 조항은 송달에 관한 규정인데, 치안관리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본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중국의 행정처벌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중국의 행정처벌법 제40조의 규정에는 행정처벌결정서는 선고 후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현장에 없는 자에게는 7일 내에 중국의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부터 제84조는 송달의 방식에 대하여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직접송달, 유치송달, 위탁송달, 우체송달, 보충송달, 공고송달이다.<sup>72)</sup>

71)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236면.

### 아. 청문회절차

치안관리처벌법 제98조에 의하면 공안기관이 회수하여 취소한 허가증 및 2천위엔 이상의 과태료에 처한 치안관리사건결정을 결정하기 전에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청문회(聽聞會)를 거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가 청문을 요구한 경우 공안기관은 속히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청문회실시에 관한 규정인데 치안관리처벌법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행정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의 행정처벌법 제42조와 제 43조는 청문회실시의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 자.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간

치안관리처벌법 제99조에 의하면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 직근상급기관의 승인을 거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안을 밝히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기간은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차. 현장처벌의 조건

치안관리처벌법 제100조에 의하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경고 또는 2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현장에서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비교적 경미한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할 경우 현장에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경우 경미한 사안은 통고처분의 형식을 통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이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72)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238-239면.

### 카. 현정처벌의 절차

치안관리처벌법 제101조에 의하면 현장에서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하는 경우 인민경찰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근무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벌결정서는 현장에서 처벌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결정서 부분을 피해자에게 발급한다.

위에서 규정한 처벌결정서는 처벌받는 자의 성명, 위법행위, 처벌근거, 과태료액, 시간, 장소 및 공간기관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처리하는 인민경찰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하는 경우 처리한 인민경찰은 24시간 내에 소속공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타. 치안관리처벌에 대한 법적 구제경로

치안관리처벌법 제102조에 의하면 처벌을 받는 자는 치안관리처벌결정서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 집행

### 가. 구류의 집행

치안관리처벌법 제103조에 의하면 행정구류처벌을 결정 받은 자에 대하여 결정을 한 공간기관이 구류소(拘留所)에 송치하여 집행을 한다.

### 나. 과태료의 집행

치안관리처벌법 제104조에 의하면 과태료처벌을 받는 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① 5십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 처벌을 받은 자가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 ② 변경(邊境), 수상(水上), 교통이 불편한 지구(地區)에서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본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결정을 한 후 처벌을 받는 자가 지정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함이 명백하여 처벌을 받는 자가 제의한 경우
- ③ 처벌을 받는 자가 현지에 고정된 주소가 없어 현장에서 징수하지 않으면 사후 집행이 곤란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사유로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그 대상자로부터 단속현장에서 직접 범칙금을 징수할 수 없음에 비하여 중국의 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제도라고 사료된다.

#### 다.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의 입금기간

치안관리처벌법 제105조에 의하면 인민경찰이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는 징수한 날로부터 2일 내에 소속 공안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상(水上), 여객열차에서는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포구에 도착하거나 역에 도착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공안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과태료를 납입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라.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에 대한 단일한 영수증 발급

치안관리처벌법 제106조에 의하면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에 처벌을 받은 자에게 자치구(自治區), 직할시의 인민정부 재정담당부서에서 표준적으로 단일하게 제작한 과태료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일하게 제작된 과태료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는 자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마. 행정구류의 집행유예

치안관리처벌법 제107조에 의하면 처벌을 받는 자가 행정구류처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류의 집행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행정구류의 집행유예가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처벌을 받는 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은 본법 제108조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보증인을 제시하거나 행정구류 1일마다 2백위엔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행정구류의 처벌결정을 집행유예한다.

이는 일종의 보석(保釋)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이나 피고인에 대한 보석(保釋) 모두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sup>73)</sup> 중국의 본 조항에 의하면 보증금 외에 '보증인'을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데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바. 보증인의 조건

치안관리처벌법 제108조에 의하면 보증인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① 본 사건과 관련되지 않음
- ②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고 인신자유가 제한 받지 않음
- ③ 현지에 상주호구(常主戶口)와 고정된 주소가 있음
- ④ 담보의무를 이행을 능력이 있음

본 조항의 보증인조건 중 정치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sup>74)</sup>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상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다.

73)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210면, 401면.

74)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256면.

#### 사. 보증인의 법적 의무

치안관리처벌법 제109조에 의하면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행정구류처벌의 집행을 도피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증인이 행정구류처벌의 집행을 도피하게 한 경우 공안기관이 그에 대하여 3천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아. 보증금의 몰수

치안관리처벌법 제110조에 의하면 행정구류처벌을 할 것으로 결정된 자가 보증금을 납부하고 행정구류를 집행유예한 후 행정구류처벌의 집행을 도피한 경우, 보증금은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 이미 행정구류결정을 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집행하여야 한다.

#### 자. 보증금의 환부

치안관리처벌법 제111조에 의하면 행정구류의 처벌결정이 취소되거나 행정구류처벌을 집행하기 시작한 경우 공안기관이 징수한 보증금은 속히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제5절 치안관리처벌법의 집행감독

#### 1.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의 치안사건처리에 관한 법적 요구

치안관리처벌법 제112조에 의하면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은 준법, 공정, 엄격, 고효율적으로 치안사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 2. 폭행, 욕설, 학대 및 모욕을 금함

치안관리처벌법 제113조에 의하면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시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폭행, 욕설, 학대 또는 모욕하는 것을 금한다.

## 3.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의 치안사건처리에 대한 감독

치안관리처벌법 제114조에 의하면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사회와 국민의 감독을 자각(自覺)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시 엄격히 집행하지 않거나 위법 부당하게 행위를 한 경우 어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라도 모두 공안기관 또는 그 인민경찰원, 행정감찰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권리가 있다. 고소·고발을 접수한 기관은 직책에 의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4. 과태료결정과 과태료징수 분리

치안관리처벌법 제115조에 의하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과태료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과태료결정과 과태료징수는 분리하여 행하여야 한다. 징수한 과태료는 전부 국고에 귀속시킨다.

## 5. 치안사건처리시의 금지행위 및 그 행정책임, 형사책임

치안관리처벌법 제116조에 의하면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시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 ① 타인을 고문하여 자백강요, 체벌, 학대, 모욕하는 경우
- ② 심문과 증거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 ③ 과태료결정과 과태료징수의 분리제도를 집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재물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는 경우
- ④ 징수, 압수한 재물을 몰래 나누어 갖거나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전용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⑤ 규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사용하거나 속히 환부하지 않는 경우
- ⑥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금을 속히 환부하지 않는 경우
- ⑦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 ⑧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과태료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태료액수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는 경우
- ⑨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지요구를 하는 신고를 접수한 후 속히 출동하지 않는 경우
- ⑩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시 위법한 범죄인을 위해 내통하며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 ⑪ 사적인 이유로 규율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기타 법정의 직책을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경우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공안기관은 앞에서 열거한 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 6. 위법한 직권행사에 대한 시정 및 행정배상책임

치안관리처벌법 제117조에 의하면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은 위법하게 직권을 행사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한 경우 사과하여야 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6절 부칙의 내용

### 1. 이상, 이하와 이내의 함의

치안관리처벌법 제118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칭하는 이상, 이하, 이내는 본수를 포함한다.

### 2. 시행의 시기

치안관리처벌법 제119조에 의하면 본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9월 5일 공포, 1994년 5월 12일 수정·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본 조항에 따라 치안관리처벌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치안관리처벌법 이전에 시행되던 치안관리처벌조례는 폐지되었다.

## 제4장 치안관리처벌조례와의 비교

2006년부터 시행중인 치안관리처벌법과 그 이전에 시행되던 치안관리처벌조례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sup>75)</sup>

### 제1절 수정·추가된 내용

수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은 조문상 치안관리처벌조례 당시 5장 45조에서 증가되어 6장 119조가 되었다. 이전의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비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조문의 체계

치안관리처벌조례는 총칙, 처벌의 종류와 운용, 치안관리위반행위와 처벌, 재결과 집행, 부칙으로 나뉘어 총 5장 45조이며 법의 체계가 간단하고 내용도 현저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법의 체계도 개선되어 총칙, 처벌의 종류와 적용, 치안관리위반행위와 처벌, 처벌의 절차, 법집행에 대한 감독, 부칙으로 나뉘어 총 6장 119조가 된다. 처벌의 절차와 법집행에 대한 감독은 전문적인 장(章)을 두었으며,

75)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이 과거의 치안관리처벌조례보다 개선된 사항에 대한 논문으로는 唐連榮, "治安管理處罰制度的完善", 廣西政法管理幹部學院學報 第2006-2期, 685頁. : <http://www.law-star.com/pshowtxt?keywords=&dbn=lwk&fn=lwk036s685.txt&upd=1> 2006.11.24 : 李穎, "淺議《治安管理處罰法》對公安機關辦理治安案件的影響", 行政與法 第2006-9期, 824頁. : <http://www.law-star.com/pshowtxt?keywords=&dbn=lwk&fn=lwk041s824.txt&upd=13> 2006.11.24.

치안관리위반행위와 처벌, 처벌절차라는 두 개의 장은 내용이 비교적 많아 장 아래에 또 내용에 따라 절(節)을 두어 규정하였다.

## 2. 치안관리위반행위의 추가

치안관리처벌을 받는 치안관리위반행위의 종류를 추가시켰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서는 법에 의해 진행되는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문화체육 등 대형 다중활동의 질서문란행위, 가짜위험물질을 설치하여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방화·폭발·위험물질 등을 설치하겠다고 호언하며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고의로 전파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한 행위, 불법으로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 컴퓨터정보시스템을 방해한 행위 등을 추가시켰다.

### 나.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위험한 기구를 휴대하고 공공장소 또는 공공교통수단에 진입한 행위, 유류가스관 등 공공시설을 절취, 손괴한 행위, 변경의 경계비, 경계석, 표지 등을 이동, 손괴한 행위, 항공기에 대하여 실시한 위해행위, 철도 및 기타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위해행위 등을 추가하였다.

### 다. 인신권리를 침해한 행위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중에서 타인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타인을 협박·기망하여 구걸하게 하는 행위, 타인에 대하여 반복하여 치근거리거나 억지로 구걸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 타인에게 불량정보를 발송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타인을 구타하는 행위,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 강매(強買) 또는 강매(強賣)하는 행위, 봉사를 강제로 받게 하거나 봉사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였다.

#### 라.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중에서 인민정부가 긴급상황 하에서 법에 따라 공포한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지역, 경계구(警戒區)를 무단 침범하는 행위, 공문·증명서·증명서류·인장 등에 대한 침해행위, 불법적으로 사회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는 행위, 여관업근무자가 국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관리규정을 위반한 주택임대행위,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정상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서비스업경영자가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타인의 분묘·유골·골분(骨粉)에 대한 방해행위, 공공장소에서의 매춘호객행위, 컴퓨터정보망·전화 및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음란정보를 전파하는 행위, 음란한 공연을 조직·진행하는 행위, 다중음란행위, 동물을 사육하여 타인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였다.

### 3. 처벌종류 추가, 과태료범위 확대, 행정구류처벌의 자유재량 감소

#### 가. 처벌의 종류 및 관련 조치 등에 관하여

치안관리처벌조례는 단지 경고, 과태료, 구류라는 3종의 처벌만 규정하였다. 치안관리처벌법에서 추가된 치안관리위반행위는 다른 법률, 법규에 관련된 행위도 있는데 그 다른 법률, 법규에는 상응한 처벌의 종류도 존재하였으므로 치안관리위반행위가 치안관리처벌법에 추가로 규정되면서 그 처벌의 종류와 상응하는 법적조치도 같이 치안관리처벌법의 처벌종류에 추가되게 되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안기관이 발부한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는 처벌을 추가하였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기한 내에 출국 또는 추방시키는 처벌을 부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금제품(禁制品)과 불법재물은 몰수하여야 하며, 대형행사를 방해한 행위자는 현장에서 강

제격리 시키며, 문화·체육 등 대형다중행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활동을 정지시킬 것을 명령하고 즉시 해산시킨다. 사회단체의 등기(登記)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속하고, 매춘·음란물·도박행위에 수차 관련되고도 개선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규정에 따라 강제성 교육조치를 할 수 있다.

#### 나. 과태료처벌액의 범위에 대하여

치안관리처벌조례는 ‘황(黃), 도(賭), 독(毒)’<sup>76)</sup> 등 행위에 대하여 최고 3천위엔 또는 5천위엔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다수의 치안관리위반행위의 과태료처벌은 보통 2백위엔 이하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 도시와 농촌주민의 수입은 6-7배 증가하였고 물가도 상승하였다. 따라서 교정과 징벌의 효과를 고려하고 동시에 도시와 농촌주민의 경제적 수입증가와 과태료처벌의 수용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과태료처벌액은 ‘황(黃), 도(賭), 독(毒)’ 및 국경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최고 3천위엔 또는 5천위엔으로 유지하는 외에 다른 행위에 대하여는 최고 1천위엔이며, 과태료의 범위 또한 몇 개의 등급으로 세분하였다. 즉 2백위엔 이하, 5백위엔 이하, 1천위엔 이하, 2백위엔 이상 5백위엔 이하, 5백위엔 이상 1천위엔 이하, 5백위엔 이상 2천위엔 이하, 5백위엔 이상 3천위엔 이하, 1천위엔 이상 5천위엔 이하이다.

#### 다. 행정구류처벌의 자유재량

치안관리처벌법은 행정구류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장 15일로 하는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류의 등급을 세분하여 5일 이하, 5일 이상 10일 이하, 10일 이상 15일 이하로 세분하여 행정구류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도록 하지 않았다.<sup>77)</sup> 이는 공안기관이 행정구류처벌을 적용시 자유재량권을 정확히 행사하는데 유리하다. 동시에 치안관리위반행위자가 두 종류 이상 치안관리위반행위가 있어 행정구류처벌을 병합하여 집행시

76) 중국에서는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분야로 종종 黃, 賭, 毒을 지칭하는데 이는 각각 性과 관련된 산업, 도박, 마약을 지칭한다.

77) 치안관리처벌조례에서는 구류의 기간을 세분하지 않고 단지 15일 이하의 구류만 규정하여 공안기관은 1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중 그 기간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었다.

최장 2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치안관리처벌조례가 행정구류처벌을 병합하여 집행시 상한이 없어 재량이 지나치게 큰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 4. 치안관리시 경찰강제 규정의 추가

공안기관이 행하는 치안관리의 현장조치를 더욱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치안관리처벌법은 치안관리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치안관리강제조치는 경찰강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sup>78)</sup> 즉,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속·활동정지명령·개선명령·강제현장격리·특정장소 진입금지·몰수 및 압수 등 치안관리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조치들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치안관리처벌법은 규정하고 있다.

#### 5. 처벌절차의 개선

치안관리처벌조례는 처벌의 절차에 대하여 그 내용이 간단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였으나 치안관리처벌법은 ‘처벌절차’라는 한 개의 장(章)을 별도로 두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절(節)을 두고 있는데 각각 ‘조사’, ‘결정’, ‘집행’이다. 이것은 치안관리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당시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던 절차규정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일부 유용한 절차규정들을 치안관리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치안관리처벌법 내에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위반행위의 접수·조사·법적 조치의 실시·기한에 관한 규정 그리고 증거채택에 대한 법적 조치로 고지절차·청문회절차의 규정·간이절차·보통절차·치안중재의 정비·집행 등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천위엔 이상의 과태료, 허가증의 회수·취소에 대하여 청문회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인민경찰은 치안관리위반행위가 사실이 확실하고 증거가 정확하여

78) 경찰강제는 경찰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서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재산 또는 가택 등에 실력을 가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상의 작용을 말한다. 이에겐 보통 경찰상 강제집행과 경찰상 즉시강제가 있다. 이는 김남현·김형훈, 경찰행정법, 경찰공제회, 2005, 190-201면.

경고(警告) 또는 2백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현장에서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외에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치안관리처벌조례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했던 것을 채택하지 않고 당사자가 치안관리처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공안과출소가 없는 지방에서 경고 또는 5십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때 공안기관이 위탁한 향(鄉) 또는 진(鎭)의 인민정부가 재결(裁決)하도록 한 치안관리처벌조례에서의 위탁수권 규정을 치안관리처벌법은 폐지하였다.<sup>79)</sup>

## 6. 결정사항의 수정

치안관리처벌조례에서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을 할 때 손실배상 또는 의료비용의 재결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행정기관의 기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안기관이 당사자 사이의 민사배상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다만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행위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한다고만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사쟁의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규정을 두었다.

## 7. 치안관리처벌법 집행에 대한 감독

치안관리처벌법은 제5장에서 치안관리처벌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전문적으로 규정하여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공정·엄격·효율적으로 치안사건을 처리하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기하여 직권남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치안관리를 위반한 피의자에게 폭행·학대 또는 모욕을 금지하고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스스로 사회와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

79)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283면.

으며, 11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위법하게 직권을 행사하여 공민·법인과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사과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 등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목한 사회를 건설하고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의 법집행행위를 규범화 하였다.

## 제2절 치안관리처벌법의 특징

치안관리처벌법과 조례를 서로 비교하면 물론 조문의 수나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매우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존중과 인권보호

치안관리처벌법의 총칙에서는 치안관리처벌을 시행함에 있어 공개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공민의 인격이 존엄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원래 치안관리처벌조례에서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신문사증(訊問查證, 신문하고 증거를 조사함)’이라고 규정한 것을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이를 ‘심문사증(審問查證,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글자 한 자를 고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인권을 존중하는 관념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80)</sup> 둘째, 어느 한 사람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다수 존재할 때 행정구류는 병합하여 집행시 최장 20일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는데 이는 치안관리처벌조례가 동일한 경우 상한을 제한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인권존중과 인권보호의 이념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현급(縣級) 이상의 인민

80) 중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신문(訊問)한다는 표현을 쓰고, 증인이나 피해자에게는 심문(審問)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문과 심문을 구별함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피의자와 증인 모두 신문(訊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 관하여는 陳光中 主編, 刑事訴訟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7, 286-289面.

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檢査)증명문서가 없다면 경찰은 국민의 주소에 대하여 함부로 검사할 수 없게 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넷째,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특별히 법집행감독 이라는 장(章)을 두어 경찰의 법집행과 사건처리를 규범화 하였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를 구타·학대 그리고 모욕하는 행위와 기타 위법한 범죄행위를 엄금하였다.

## 2. 처벌받는 자의 권리구제방법을 추가

첫째, 청문회의 규정을 추가하여 공안기관이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시키거나 2천위엔 이상의 과태료를 과하는 치안관리처벌을 결정하기 전에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가 청문회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가 청문회를 요구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속히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sup>81)</sup> 둘째, 치안관리처벌조례가 규정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규정을 삭제하고 치안관리처벌법에서는 처벌을 받는 자가 치안관리처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을 신청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처벌을 받는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인간본위의 정신 구현

치안관리처벌법을 살펴볼 때 인간본위의 정신을 구현한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14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이 처음인 경우, 70세 이상, 임신 또는 1세 미만의 영아를 수유하는 경우, 행정구류처벌을 집행하지

81)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청문권이 있음을 행정처분의 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음과 비교하여 볼 때 중국의 이러한 규정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제22조(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거나 또는 감경시키고 아울러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경우 등에는 감경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음란하거나 모욕적이거나 공포감을 주는 정보 등을 발송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타인의 사생활 등을 몰래 훑쳐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여 국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의 자 또는 60세 이상의 자를 구타, 상해하는 경우는 이외의 일반인을 구타하는 경우보다 중중처벌(從重處罰)한다. 또한 소음을 내거나 동물을 사육하면서 타인의 정상생활을 방해한 경우도 처벌을 받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치안관리처벌법이 중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셋째,公安기관이 사건을 수리한 후 조사를 거쳐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아닌 것이 밝혀진 경우,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자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를 소환한 경우 소환한 원인과 장소를 피소환자의 가족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안관리처벌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벌 전에 이미 강제조치로 인신자유를 제한한 기간은 공제되어야 하는데 인신자유를 제한한 1일은 행정구류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행정구류의 처벌을 결정한 경우 속히 처벌을 받는 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안관리처벌결정서부분은 피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sup>82)</sup>

#### 4. 公安기관 특히 인민경찰에 대한 법집행시 준수할 규범의 강화

公安기관 특히 인민경찰의 법집행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화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안관리처벌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이라는 하나의 장(章)을 전문적으로 증가하였고, 公安기관 특히 인민경찰이 치안관리처벌을 하는 과정 중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을 규정하여 11개 항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고, 또한 위법한 직권남용의 경우,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2) 熊一新·華敬鋒 主編, 전계서, 284-285면.

## 제5장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에 대한 종합분석

### 제1절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의 체계

지금까지 위에서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번역과 해석을 통하여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이 규정한 치안관리위반행위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치안관리처벌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총 119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법의 체계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3)</sup>

<표 1>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의 체계

	내 용	조 문
총 칙	치안관리처벌법의 목적과 임무	제1조
	치안관리위반행위와 치안관리처벌 개념과 근거	제2조
	치안관리처벌절차의 법적 근거	제3조
	지역관할	제4조
	치안관리처벌의 기본원칙	제5조
	각급 지방정부의 치안에 관한 임무	제6조
	치안관리 책임부서와 치안사건의 관할	제7조
	치안관리위반행위와 민사책임	제8조
	치안조정	제9조
처벌의 종류와 적용	처벌의 종류	제10조
	압수물품의 처리	제11조
	미성년자의 치안관리위반 처리	제12조
	정신병자의 치안관리위반 처리	제13조
	맹인 또는 맹아자의 치안관리위반 처리	제14조
	주취자의 치안관리위반 처리	제15조
	두 종류 이상의 치안관리위반 처리	제16조
	공동으로 치안관리위반한 경우 처리	제17조
기관, 단체의 치안관리위반 처리	제18조	

83) 高緒文, 治安管理處罰法圖解, 法律出版社, 2005, 1-43면.

		감경처벌 또는 처벌면제	제19조
		중중(從重)처벌	제20조
		행정구류의 집행면제	제21조
		시효	제22조
치안관리위반 행위와 처벌	공공질서문란행 위와 처벌	일반적 공공질서 문란행위와 처벌, 대형 다중활동의 질서문란행위와 처벌 등	제23조~제29조
	공공안전방해행 위와 처벌	위험물질로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중요시설을 침해하여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등	제30조~제39조
	인신권리·재산 권리 침해행위와 처벌	타인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처벌, 구결과 관련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처벌 등	제40조~제49조
	사회관리방해행 위와 처벌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신분을 가장하여 기망하는 행위와 처벌 등	제50조~제76조
처벌의 절차	조사	치안사건의 수리, 접수사건의 처리, 증거채집, 수사상 보안, 회피, 피해자 또는 증인심문, 압수, 감정 등	제77조~제90조
	결정	치안관리처벌의 주체, 처벌 전 고지 및 의견청취, 치안관리처벌결정서 등	제91조~제102조
	집행	구류의 집행, 과태료의 집행, 행정구류의 집행유예, 보증인의 조건 등	제103조~제111조
집행에 대한 감독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의 치안사건처리에 관한 법적요구, 치안사건처리시의 금지행위 및 행정책임과 형사책임, 배상책임 등	제112조~제117조	
부 칙	이상, 이하, 이내의 의미와 시행시기	제118조~제119조	

## 제2절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과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의 비교

중국의 치안관리위반행위란 형벌을 과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처벌할 필요가 있는 행위로써 치안관리처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중국의 공안기관 특히 중국의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리를 결정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한 행위는 경미한 범죄행위로서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될 수 있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찰이 통고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과 가장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률은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경

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소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법으로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경찰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를 규정한 법으로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처리비교표

	중 국	우리나라	
	치안관리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처벌의 대상	*치안관리처벌법에 저촉되는 치안관리위반행위로서 종류가 다양하고 위반행위의 수가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상의 행위보다 매우 많음.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행위로서 현재 50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행위
처벌의 종류	*경고 *과태료 *행정구류 *허가증 회수 및 취소 *외국인에 대한 출국 및 추방 조치	*통고처분 *즉결심판에 의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압수물의 처리	치안사건의 처리시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 등 통제없이 몰수, 환부, 국고귀속 조치 가능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행
미성년자 처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종경(從輕)·감경처벌 규정 있음.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그 부모에게 엄격한 지도를 할 것을 명함.	*18세 미만의 자는 범칙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며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음.	
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 처벌	심신상실자에 대하여 그 보호자에게 보호, 치료를 명함.		형법에 의해 심신상실자는 처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자는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음.
농아·맹아자	종경(從輕)·감경할 수 있음.		필요적 감경사유이며 맹아자에 대한 규정 없음.

주취자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시 처벌하며 주취상태에서 깨어날 때까지 보호조치 함.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해결하며 경찰관서에서는 24시간내 보호 가능.
경찰에 대한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의 업무집행에 대한 일반적 수권조항 있음.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은 없다는 것이 다수설 내지는 통설임.
경찰의 업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제50조에서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하는 치안관리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차량통행 방해행위 등 구체적 규정 존재하며,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집행방해행위보다 중중(從重)처벌 즉 더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둠.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없음.
경찰의 치안사건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제74조에 의하여 경찰의 치안사건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며, 제82조에 의해 강제소환 즉 체포할 수 있으며 심문과 증거조사를 위해 최장 24시간 수사할 수 있음.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경찰의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영장의 청구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주체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법 제196조에 의해 수사상 검사의 지휘를 받는 상명하복구조로 되어 있음.
치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6조에서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치안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제6장 결 론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범죄처벌법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면서 형법 및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 등의 경찰의 직무관련 법률의 기능을 포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경찰의 치안확보에 관하여 가장 실무적이면서 그 기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또는 법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찰의 치안확보라는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경찰의 업무집행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치안관리처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고, 과태료, 행정구류의 처벌을 중국의 경찰기관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물론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단은 경찰의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류의 처벌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경찰기관의 단독 결정만으로 시행하도록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상 인권보호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도입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둘째,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으로 국가의 질서유지와 치안확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50개 행위를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에 청구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나 법이 제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났으며 새롭게 경범죄처벌법에 추가하여야 할 행위가 많다고 본다.<sup>84)</sup>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경찰업무의 수행상 업무처리에 대한 잘못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사과와 손해

84) 경범죄처벌법은 1954년 처음 제정되어 위반행위의 종류가 1980년 개정시 58개에서 현재 50개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신중범죄 또는 규제대상 범죄의 확대가 약 25년이 넘도록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2006.11.26.

배상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경찰의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실보상문제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경찰관들이 소극적인 근무를 하게 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위의 <표 1>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의 체계와 <표 2>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처리비교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을 참고삼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I. 단행본

#### 1. 국 내

- 경비실무, 경찰종합학교, 2001.
- 김남현·김형훈, 경찰행정법, 경찰공제회, 2005.
- 김형훈, 방법기본법, 경찰대학, 2003.
- 박상용 외, 경찰관직무집행법해설, 경찰청, 2001.
-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6.
- \_\_\_\_\_,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6.
-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 이연수, 범죄수사규칙해설, 박문각, 2000.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 임 옹, 형법총론, 법문사, 2005.
- \_\_\_\_\_, 형법각론, 법문사, 2005.
-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 2. 중 국

- 高緒文, 治安管理處罰法圖解, 法律出版社, 2005
- 陣晉勝, 警察法學概論, 高等教育出版社, 2004.
- 劉茂林, 憲法教程, 法律出版社, 1997.
- 侯國雲, 刑法總論探索,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4.
- 趙秉志 主編, 新刑法教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7.

- 熊一新·華敬鋒 主編, 治安管理處罰法解讀與適用, 法律出版社, 2006.
- 陳興良, 規範刑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3.
- 周光權, 刑法各論講義, 清華大學出版社, 2003.
- 何秉松, 恐怖主義·邪教·黑社會, 群眾出版社, 2001.
- 高銘暄·馬克昌, 刑法學(下編), 中國法制出版社, 1999.
- 王國樞, 刑事訴訟法學, 北京大學出版社, 1998.
- 王遠明 외, 刑事訴訟法實例說, 湖南人民出版社, 1999.
- 樊崇義, 刑事訴訟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6.
- 張建良, 刑事強制措施要論,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5.
- 孫長永, 偵查程序與人權-比較法考察, 中國方正出版社, 2000.
- 陳光中 主編, 刑事訴訟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7.

## II. 논 문

### 1. 국 내

-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 이진권, “중국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2집, 2006.
- 이진권, “中國 刑法에서의 量刑情節에 관한 考察”,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2002.
- 조 국, “경찰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의 법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3.

### 2. 중 국

- 劉仁文, “治安管理處罰條例需要全面修訂”, 法學雜誌 第1999-1期, 718頁.
- 唐連榮, “治安管理處罰制度的完善”, 廣西政法管理幹部學院學報 第2006-2期.
- 任惠華·李春瑾, “《治安管理處罰法》基本原則研究”, 貴州省政法管理幹部學院學報 第2005-2期.
- 李 穎, “淺議《治安管理處罰法》對公安機關辦理治安案件的影響”, 行政與法 第2006-9期.

### Ⅲ. 기 타

#### 1. 국 내

<http://www.moleg.go.kr/>

<http://blog.daum.net/kurtbae/755271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275889&section\\_id=102&menu\\_id=](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275889&section_id=102&menu_id=)

[http://new.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134764&section\\_id=0&menu\\_id=0](http://new.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134764&section_id=0&menu_id=0)

#### 2. 중 국

<http://www.law-star.com/pshowtxt?keywords=&dbn=lwk&fn=lwk005s718.txt&upd=1>

<http://www.law-star.com/pshowtxt?keywords=&dbn=lwk&fn=lwk036s685.txt&upd=1>

<http://www.law-star.com/pshowtxt?keywords=&dbn=lwk&fn=lwk027s655.txt&upd=1>

<http://www.law-star.com/pshowtxt?keywords=&dbn=lwk&fn=lwk041s824.txt&upd=13>